



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

주소: 우12461,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267-181 3층 / 전화: 02)3271-0520 / fax: 02)3271-0535 / 담당자: 설형석

문서번호 : 세가업무 가정 19-38호	선			지	
시행일자 : 천일국 7년 11월 10일 (양력 2019년 12월 6일)	결			시	
수 신 : 지구장, 교구장, 교회장	접	일자	.	결	
경 유 :	수	시간	:	제	
참 조 : 지구 가정부장, 교구 가정부장		번호		.	
	처 리 과			공	
	담 당 자			람	

제 목 : 미혼 2세·1세 가정의 2세가정 편성을 위한 교육 추가 안내

1. 귀 교회에 천지인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2. 현장의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축복을 준비하는 가정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현장 문의 사항

- 1) '미혼 2세·1세 축복기준'은 축복이전 40일 수련 참석조건이나, 축복식까지 일자가 부족한 경우

나. 가정국 방침

- 1) 공문기준(2016년 6월 1일자 발송, 세가본 237호:가정-15호) : 예비부부가 수련일정 100% 수료 후 축복참석 (수련방법: ① 40일 수련 ② 21일 수련 2회 ③ 1박2일 수련 3개월 연속 참석 후 잔여일은 타 수련참석, 단 연속참석 못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계산)

- 2) 최소조건 : 수련 전체 기간의 60% 이상 축복식 이전 참석 -> 나머지 부분을 축복식 이후 참석하여 수료할 것을 목회자와 후보자 함께 사유서 제출 -> 축복식 이후 잔여일 수련 참석

- 3) 한·필, 한·태 2세·1세 가정의 경우 :

- 가) 외국 여성후보자 경우 : 12월 약혼서약식 및 문화체험 이후로 축복식 참

가 결정 되면 입국하여 '축복 전 청평수련 참석 -> 축복 (-> 잔여일 수료) -> 임지생활 -> 임지교육' 까지 90일(비자기간 3개월) 참석

나) 한국 남성후보자는 축복결정이 되면 바로 40일 수련에 참석 (최소60%이상 참석해야 하며, 전체 기간 수료 못 한 경우는 나-2)항 '최소조건'과 동일하게 진행함)

4) 청평 40일 수련 참석자의 교육 인정: 축복식 이전에 100% 참석할 경우 한하여, 원리수련 2회와 생애노정1회 인정 (축복교육은 프로그램 검토 후 인정하며, 원리시험은 수련 중 시험을 보고 통과되면 인정)

가 정 국 장 홍 성

